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236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배경환

변 론 종 결 2021. 5. 26.

판 결 선 고 2021.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충주시 E 대 4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7. 14. 접수 제326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15. 6. 4. D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10.9%, 지연이자 연 25%, 대출기간 36개월간(익월 5일부터 매월 5일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D은 2016. 5. 5.부터 분할상환할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다가, 2016. 7. 6.을 마지막으로 변제를 중단하였다.

다. F은 2016.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11. 4. 내용증명우편으로 D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7. 1.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같은 달 1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2016. 7. 1.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잔여 원금은 21,068,801원이었고, 2016. 7. 6. 추가로 변제된 981,411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한 후의 잔여 원금은 20,276,296원이었다. 이후 2016. 12. 26. 추가로 일부금원을 변제받고 남은 잔여원금은 15,262,19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재산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친족인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D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여금은 자동차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D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7. 1. 이전에 이미 성립한 것으로서 그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매매 당시 D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연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런데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며,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처분행위 당시의 담보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옳다. 위와 같은 법리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받을 금액과 이를 공제한 피보전채권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행위 당시의 자동차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처분행위 후 자동차의 소재불명 등으로 근저당권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거나 처분행위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상각 등으로 자동차의 시가가 하락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0661 판결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이 사건 대여 당시 F에 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은 2014. 9. 24.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가 이후 주식회사 H에 재차 소유권이전등록된 사실, 이 사건 차량에는 이미 2012. 9. 4. D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F과 D이 기존의 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합의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담보된다는 점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은 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보험개발원에서 조사, 발표하는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하면 2003년식 23톤 덤프트럭(제조사 I)의 2016. 7. 당시 기준가액이 569만 원이고, 동 기관에서 고시한 덤프트럭의 내용연수가 10년인 사실, F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6.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J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이후 원고의 신청취하로 종결된 사실은, 갑 제9,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기준가액은 덤프트럭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차량은 2002년식 25톤초장축카고트럭으로서 차종을 달리하는 점, ② 이 사건 대여금은 중고차대출계약에 의하여 D에게 지급되었으므로, 대여금 원금 3,000만 원 상당이 이 사건 차량의 매수와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담보로 제공된 차량의 가치가 대여금액의 산정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D이 이 사건 차량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한 시점과 이 사건 매매 간의 시간적 간격은 2년이 채 되지 않고, 이 사건 대여일로부터는 1년 남짓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최대 569만 원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차량의 사해행위 당시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이 사건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된 우선변제권의 범위 밖에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형웅